[모바일]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제17조(적합성원칙)에 따라 귀하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허위 또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경우 부적합한 보험계약을 권유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보험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기대하는 특별계정(펀드)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설계사 등 타인이 본 확인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귀하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기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합니다. 완전 판매모니터링("해피콜")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로 확인되는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여부 확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일반·전문금융소비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mark>아래 내용을 확인 후 작성</mark>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의미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의미합니다.
 - (예)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금융협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보험관계단체, 보험설계사·대리점 및 중개사 등 보 험모집종사자,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및 동일한 회사·사업장·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
- 관계법규 등의 확인을 거쳐 전문금융소비자 여부를 판정하며,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동일한 대우) 가능한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전환가능 소비자 예시)]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기업성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동일한회사사업장·조합 등 5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

전문금융소비자 여부 확인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 예시 - [단체]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금융협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보험관계단체 - [단체] 근로자 5 인이상의 법인/단체(법인/단체 소속인이 아닌, 단체자격으로 가입하는 경우) 등
	- [개인] 보험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등 보험모집 종사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 조제 7 항제 3 호(투자성 상품의 경우 제 2 호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 관련 확인	포함)에 해당하는 전문금융소비자로, 관계법규에 따라 귀사로부터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자 함 □ 예 □ 아니오 (전문금융소비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 일반금융소비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자 할 경우 상기 전환 신청이 필요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을 요청하더라도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성향 진단을 위한 질문	
보험계약자 연령	만 ()세
취약금융소비자 해당여	□ 예 (□ 만 65 세 이상, □ 미성년자, □ 정신적 장애로 일상·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자) □ 아니오 부 ※ 취약금융소비자란 고령투자자(만 65세 이상),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로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 등으로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자로서 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자를 의미합니다.